

# 美國우라늄產業의 近況

## 濃縮事業 民營化와 함께 앞으로의 推進注目

美國의 デンバー聯邦地方法院은 6월 20일 내년이후 電力會社 등 미국내의 濃縮需要者用으로 미국 에너지省(DOE)이 外國產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미국내의 우라늄礦山會社 3個社가 新濃縮契約의 破棄, 국내 우라늄산업의 보호를 요구해서 일으킨 소송에 의한 것으로서 국내 우라늄산업을 보호하는 입장의 명령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 DOE는 모든 法的對抗措置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다.

世界의 우라늄需要는 이전의 예상만큼 伸長하고 있지 않으며, 카나다 등에서 저렴한 코스트로 採掘이 가능한 우라늄礦脈이 개발된 것 등에 의해서 우라늄價格은 低迷狀態에 있다. 이로 인해 미국에 값이싼 外國의 우라늄이 수입되어, 미국내의 우라늄생산규모는 해마다 축소되고 있으며 경영적으로도 赤字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美國의 原子力法 第161條5項에는 국내 우라늄산업의 存續을 도모하기 위해 原產地가 외국인 核原料物質을 미국내 또는 管轄下에 있는 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DOE는 필요한 限度의 量을 제외하고는 濃縮役務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DOE는 우라늄濃縮事業이 유럽 여러 나라의 攻勢에 의해 지분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여 30%까지는 DOE 이외의 농축우

라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춘 新濃縮契約을 1984年1月에 提案하여 우라늄농축사업의 補強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또한 수입우라늄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1984년에는 완전히 徹廢되고 있다.

이와 같은 DOE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Western Nuclear社, Energy Fuel Nuclear社, Uranium Resource社 등 3個社는 미국내 우라늄산업에 있어서 30%까지 DOE 이외에서 농축가능이라는 조건은 수입우라늄을 증가시켜 미국내 우라늄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US계약의 파기, 우라늄수입의 제한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1984년 12월에 聯邦地方法院에 제기했던 것이다.

그후 美國會計検査院(GAO)이 民主黨議員의 요청에 의해 US계약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1985년 1월에 US계약은 농축요금의 上限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농축시설의 건설에 있어 原子力法에서 의무화되고 있는 코스트의回收를 할 수 없다는 점, DOE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점 등에서 原子力法에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정리했다.

더우기 작년 9월에는 덴버聯邦地方法院이 US계약은 原子力法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는 행정수속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無効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DOE에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에 텐버聯邦地方法院에서 내린 명령은 이와 같은 흐름에 따른 것으로서概略的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國內需要者用 外國우라늄의 농축을 1986년 6월 6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全量의 25%이하로 제한한다.

2. 1987년 1월 1일 이후는 DOE長官이 미국 우라늄산업의 건전성을 확인할때까지 国内수요 자용 해외우라늄의 농축을 금지한다.

이 내용은 도메니치上院議員이 提案한 外國 우라늄 비율의 上限值를 50%로 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해졌으며, DOE 뿐만 아니라 이미 거의 대부분을 외국우라늄에 의존하고 있는 電力會

社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美國國務省(DOS)도 이 명령에 困惑하고 있으며, 에너지·原子力擔當次官補는 이 명령은 미국 농축사업의 衰退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축사업의擴散이 일어나서 核武器製造의 潛在的 能力を 갖는 國家가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고 표명하고 있다. 또한 美國通商代表部의 에너지通商政策局長은 카나다와의 관계악화로도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DOE는 이 명령에 대해서 강력한 태도로 임하고 있으며, 控訴를 포함해서 모든 法的對抗措置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미국 농축사업의 民營化 問題와 아울러 앞으로의 진행이 주목된다.

## 原電 撤廢는 非現實的 西獨과 스위스의 試算

체르노빌原子力發電所事故의 영향을 직접 받은 유럽에서는 최근 몇년동안 잠잠하던 反原電運動이 다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여 각국에서는 原電moratorium을 요구하는 운동 등이 재개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로 원자력발전의 포기 또는 다른 에너지로의 轉換이 경제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議論이 있어서 몇가지 試算이 나오고 있다.

觀念的, 感情의인 의론을 피하고 現實에 맞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의미에서도 흥미가 크므로 다음에 西獨과 스위스에서 행해진 試算을 소개한다.

西  
獨

### 代替策 등 코스트試算

撤廢에 따른 費用은 數百億DM 規模

서독에서는 綠色黨이 原子力利用의 即時廢棄,

社會黨이 段階的 撤廢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독의 經濟省과 研究技術省, 電力聯合 등이 試算을 발표하고 있다. 각각의 입장은 반영해서 그 수치에는 幅이 있으나, 그 몇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가동중 혹은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政府認可를 받은 시설이므로 特別히 安全性이 위배되지 않는 한 運轉을 中止시키면 그 설비에 대해 補償을 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西獨經濟省은 千百億에서 千5百億도이취마르크(DM), 研究技術省은 千2百億DM로 見積하고 있다. 또 停止로 인해서 발생하는 코스트로는 150億DM(研究技術省), 原電의 停止에 따르는 電力코스트의 上昇分으로는 40~50億DM(經濟省)를 예측하고 있다.

原電의 停止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代替에너지는 約1,260億kWh로서 여기에는 約4,200万톤